2023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

R&E 프로그램 신청 요강



(www.sshs.hs.kr)

2023. 02. 13.

서울과학고등학교

1. 사업 목적

과학영재학교 학생에게 대학 교수 및 박사급 연구 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첨단 과학 분야의 시설·설비를 활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킴

2. 사업 내용

가. R&E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

- 1) 창의적 사고력 및 연구 능력 신장
- 2) 과학 연구 체험을 통한 과학 정신 함양 및 진로 탐색

나. R&E 프로그램의 기본 운영 방침

- 1) R&E 프로그램의 교수·학습 과정
 - ① 연구과제 도출 : 지원된 탐구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연구과제 도출
 - ② 기초 이론 및 배경 지식 교육 : 연구책임자의 지도하에 과제와 관련된 기초 이론 및 배경 지식 등을 교육
 - ③ 집중 실험 및 연구: 세부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실험 및 연구 활동
 - ④ 보고서 작성 및 발표 :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 작성 및 발표
- 2) R&E 프로그램의 학생평가
 - ① Distinction. Merit. Pass 3단계로 학기별 평가
 - ② 연구책임자 및 지도교사에 의한 학생 개인별 평가

내용		연구책임자	지도교사	월 계
	출결	탐구 활동	태도	합계
배 점	20	50	30	100

다. 2023학년도 지원 탐구주제의 규모와 성격

- 1) 본교의 2학년을 대상으로, 탐구주제 수는 34 과제 이내로 한정하며, 연구 분야는 학생 희망과 공모 내용을 종합하여 배분할 예정임
- 2) 탐구주제는 연구를 통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적합한 주제와 내용이어야 함
- 3) 연구 기간은 2023년 3월 ~ 12월(10개월)이며, 산출물을 발표할 수 있어야 함

- 4) 연구비 금액은 2022학년도에 준하여 지원하되, 지원 탐구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함(실험 주제: 850만원 내외, 이론 주제: 650만원 내외)
- 5) 신청 연구비의 심의를 통해 연구비 계획은 조정될 수 있음
- 6) 연구 분야(<u>가장 인접한 분야로 지원, 공학 또는 융합은 관련 분야 추가 선택</u>) 수학, 물리, 화학, 생명과학, 지구 및 환경, 정보, 공학, 융합

라, 지위 자격

- 1) 연구책임자
 - ① 대학교·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교수·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 하고 있는 자
 - ②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원으로서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자
- 2) 지도교사 :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

3. 신청 방법 및 탐구주제 선정

가. 신청 방법

- 1) 탐구주제의 발굴 및 지원신청서 작성
 - ① 과학영재들의 창의성과 탐구 능력을 신장하는데 적합한 탐구 주제 발굴
 - ② 2023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 R&E 지원신청서 작성
- 2) 신청 절차 및 기한
 - ① 서울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(https://sshs.sen.hs.kr/) 공지사항에서 지원신청서 를 다운받아 작성
 - ② 신청 기간 : 2023년 2월 14일(화)~ 2월 28일(화) 17:00까지
 - ③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:
 - e메일로 파일 제출(2023년 2월 28일(화) 17:00까지)

담당자 전화번호: 02-740-6391 e메일 주소: RnE@sshs.hs.kr

- 3) 제출 서류(e메일로 제출)
 - ① [붙임2]2023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 R&E 인적사항(엑셀파일로 송부)
 - ② [붙임3]2023학년도 서울과학고등학교 R&E 지원신청서(한글파일로 송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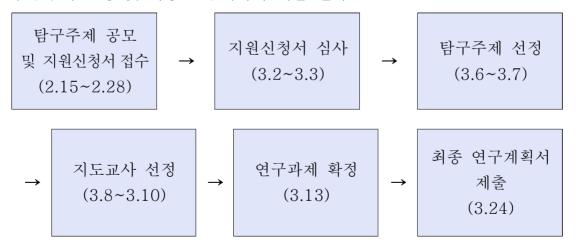
나. 탐구주제 선정

- 1) 기본 방향
 - ① 선정 주제의 전문성, 투명성, 공정성 확보
 - ② 각 분야 전문가 및 영재교육 전문가 참여
 - ③ 학생 희망과 신청된 탐구주제와 내용에 따라 분야별 지원 과제 수 고려
 - ④ 우수 탐구주제의 발굴과 참여 기회 확대

2) 선정 기준

구분(배점)	평가항목(배점)
	탐구주제 수준과 학생의 탐구 능력 일치성(25)탐구주제의 참신성, 유용성, 적정성(25)
	탐구주제 내용의 사사 교육의 적합성(25)탐구주제 수행 계획의 실행가능성(25)

3) 탐구주제 선정 및 최종 연구계획서 제출 절차



※ 연구 기간 : 2023년 3월 ~ 12월(10개월)

4. 주요 업무 일정

2.15.(화) ~2.28.(화)	탐구주제 공모 및 지원신청서 접수
3.2.(목) ~ 3.3(금)	지원신청서 심사
3.6.(월) ~ 3.7.(화)	탐구주제 선정
3.8.(수) ~ 3.10.(금)	지도교사 선정
3.22.(수)	R&E 프로그램 안내, 학생-팀 매칭(교내 활동)
3.24.(금)	최종 연구계획서 제출(소속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본교로 공문 발송)
3.27.(월) ~ 4.26.(수)	최종 확정 과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의 협약 시행
4.5.(수)	R&E 활동(4시간) - 연구책임자와 학생이 논의하여 연구과제 구체화 및 확정
5.10.(수)	R&E 활동(4시간)
5.22.(월) ~ 5.25.(목)	집중 R&E 활동(8시간 × 4일)
6.14.(수)	R&E 활동(4시간)
8.9.(수) ~ 8.10.(목)	집중 R&E 활동(8시간 × 2일)
8.23.(수)	R&E 활동(4시간)
9.6.(수)	R&E 활동(4시간)
9.20.(수)	R&E 활동(4시간)
10.12.(목) ~10.13.(금)	집중 R&E 활동(8시간 × 2일)
10.18.(수)	R&E 활동(4시간)
11.1.(수)	R&E 활동(4시간)
11.8.(수)	R&E 활동(4시간)
11.22.(수)	R&E 활동(4시간)
11.29.(수)	R&E 활동(4시간)
12.21.(목)	집중 R&E 활동(8시간, 교내 활동)
12.22.(글)	R&E 결과 발표(교내 활동)
12.26.(월)	집중 R&E 활동(8시간, 교내 활동)

[※] 본교 학사일정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.

[붙임1]

서울과학고등학교 R&E 연구비 계상기준

아래 기준을 적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관련서식에 따라 해당분야만 작성

1. 총 괄

	구 분				
비목	문 세목	사용용도	계상기준		
직접비	사업 장비 · 재료비	1.해당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 장비와 부수기자재(해당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), 연구(사업)시설의 설 치·구입·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2. 시약·재료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, 전산처리 및 관리비 3. 시제품·시작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	실소요 경비를 계상		
	사업 활동비	1. 참여원의 국외 출장여비 2.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·복사·인화·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 요금·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. 전문가 활용비(사업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원 및 그 참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,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, 여비 등 관련 경비), 국내외 교육 훈련비, 도서 등 문헌구입비, 회의장 사용료, 세미나 개최비, 학회·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 등 4. 시험·분석·검사, 임상시험, 기술정보수집,특허정보조사·분석·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	이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상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 데도 사업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 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 상해서는 안되며 참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 서울과학고 학생이 포함되지 않는		
	사업 추진비	 참여인력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,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·비품의 구입·유지비용 등 회의비(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는 제외) 해당 사업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	사업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상하며,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를 계 상 참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		

			- R&E 프로그램 연구책임자
	사업 수당	해당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업 책임자 및 참여 원의 보상금·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당 초계획서보다 초과집행 불가	: 400,000원/월
위탁 사업비	위탁 사업비	사업수행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	※ 계상하지 않음
간접비	간접비	1. 인력지원비 가. 지원인력 인건비 :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. 능률성과급 :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우수한 사업성과를 낸 참여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. 사업지원비 가. 기관 공통지원경비 : 사업수행에 소요되는기관 공통지원경비 3. 성과활용지원비 가. 과학문화활동비: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등의 제작, 강연,체험활동 및 홍보전문가 양성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.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: 수행사업과 직접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에 필요한 모든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비용(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가능)	※ 연구비의 5% 이내 계상

2. 세부비목별 작성 기준

세 목	항 목	계 상 기 준
사업장비 · 재료비	기자재 및 시설비	 ○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기기, 사전 변경(대체)승인 절차에 의한 기기 구입비만을 인정함 - 시설비, 기자재도입 부대경비(통관, 보세, 운송료 등) - 외부기자재 임차비용 및 연구시설의 임차・설치・운영에 필요한 경비 - 연구기자재 부품 구입비 ※ 구입된 기자재 및 시설은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재 ○ 불인정항목 - 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구입한 기자재 및 시설비 - 당해과제 사업수행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구입 - 사업책임자가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자재, 시설의 임차비 - 소속기관 공동기자재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- 사업수행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구입 및 임차비 등 (팩스, 에어컨, 책상, 정수기, 사무용 집기류, 프린터, 복사기, 스캐너, 개인용 컴퓨터, 디지털카메라 등)
사업장비 · 재료비	재료비 및 전산처리 · 관리비	○ 당해 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, 시험분석료, 전산처리・관리비(전산소모품 포함) - 정보 D/B사용료, 시험분석료, 컴퓨터사용료 -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-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해소(인터넷 포함) -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- 당해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을 위한 경비(일용직 조사원 일비, 임상검사(실험)비, 기타 조사비용등) -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- 컴퓨터 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조립PC가 되는 경우 연구기자재비에서 해소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기기(비품) 구입은 연구기자재에서 해소 - 내구년수 1년 이상의 기기(비품) 구입은 연구기자재에서 해소 -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치 않은 시약, 재료비 -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 흡수 전산처리비 - 자체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- 공공요금 이중집행(수용비 및 수수료)
	시작품제작 비	○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제품·시작품, 파일럿 플랜트 제작경비의 실 소요경비 ○ 불인정항목 - 재료비와 중복 집행한 경우

항 목	비 목	내 용
사업 활동비	참여원의 국외출장 여비	 ○ 사업참여인력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국외 출장여비로, 주관사업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- 여비는 출장명령 품의 후 주관사업기관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인력별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되, 여비를 사후 정산할 경우 관련영수증으로 실비정산 함 (단, 주관사업기관의 출장기간의 여비지급기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.) - 정산서류: 내부 결재 문서(출장자, 기간, 장소, 목적, 여비산출내역, 세부일정 포함) 내부여비 규정 가드매출전표(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) 내부결째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○ 불인정항목 - 서울과학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되지 않은 국외 출장 여비 -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- 국외 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-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시 출장기간 초과, 체재지역외 사용, 연구목적과의 무관한 경비 - 사업계획서에 없거나 당초내역과 상이한 국외여비(다만,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전 변경승인 절차에 의한 국외여비는 제외) -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- 숙박비,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
	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사무용품, 등	 ○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이 있는 인쇄비, 복사비, 인화비, 슬라이드제작비,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- 우편료, 전화사용료, 전용회선사용료 등 - 사업기간 내 당해 과제 결과의 논문게재료 - 송금수수료,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- 정산서류: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○ 불인정항목 - 신문구독료, 명함(첩) 제작비, 세차비, 차량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(다만, 과제수행과 직접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는 인정) - 사업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- 기관운영판공비, 찬조금, 화환구입비 등

항 목	비 목	내 용
사업 발	기타	○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정산서류: 내부결재문서(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),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, 계좌이체 증명 ○ 참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정산서류: 내부결재문서, 교육기관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 교육수료증, 계좌이체증명(교육비 계좌입금증) ○ 기술정보수집비, 특허정보조사비 정산서류: 내부결재문서, 계좌이체 증명 ○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(해당 사업수행 관련 도서만 인정) 정산서류: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, 거래명세서 ○ 세미나 개최경비(장소임대료, 행사경비, 프로시딩 발간경비 등) 정산서류: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(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 소속 및 성명, 목적, 회의내용 등 포함),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 ○ 학회・세미나 참가비(※ 학회참가 여비는 여비에서 사용) 정산서류: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, 학회등록비 영수증 ○ 기술도입비 정산서류: 내부결재문서,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, 기술도입계약서, 기술검수조서 등 ○ 논문게재비 정산서류: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, 논문명, 학술지명칭, 발행국가, SCI 여부, 게재 연월일, 권호, 저자명,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○ 불인정항목 -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(여학, 자격증)을 위한 교육 훈련비 -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, 석 박사과정 논문지도비 등 -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- 해당 사업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 세미나 참가비 - 학회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미 - 선물(기념품) 구입비(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)

항 목	비 목	내 용
		 사업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, 논문게재료 등 직접적인 사업비(포상금, 사업지원금 등)는 사전승인을 받기 전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직접비 타 세목과 중복하여 사용 불가 전문가활용비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사업참여자에 대한 전문가 활동비(원고료, 자문료) 및 각종 수당 지급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 집행(회의목적, 회의일시, 참석자,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) 및 유흥주점,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경우 업무추진을 입증할 수 없는 심야, 휴일, 휴가, 타 지역에서의 회의식대 학회 주관의 세미나 등 행사 경비, 강사료, 기념품경비 등 학회 후원금 지출경비 외국 자료 구입시 환율 미적용 사례 개소식, 준공식 행사경비, 감사패 제작비, 선물경비 등 기관 관련 행사 비용(간접비 지출) 사업활동비에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을 신설 집행하거나 홍보 관련 경비를 집행한 경우
사업 추진비		○ 국내여비 정산서류 : 여비규정, 출장신청서, 계좌이체증명 ○ 회의비 정산서류 :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(회의목적, 회의일시, 참석자, 회의내용등이 포함), 카드매출전표 ○ 사무용품비(소모품), 사업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정산서류 :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, 거래명세서 ○ 식대 정산서류 :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, 지출결의서,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○ 불인정항목 -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-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- 출장(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)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삭제

항 목	비목		내 용
			-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- 교육 사업이 아닌 대상사업에 사용된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-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된 금액 -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-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-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- 참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한 금액 - 출장비(식대 포함된 경우)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-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
사업수당	사업수당		○ 해당 사업 수행관련 사업 책임자 및 참여원에게 지급 -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 불가
	인력지원비 /사업지원 비		 지원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법 : 참여인력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 (세금 공제 후 집행) 간접비를 인건비, 직접비로 비목변경하여 집행 가능
간접비	성화 왕원 지 비	지적 재산 권출 원· 등록 비	수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·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 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(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 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)
		과학 문화 활동 비	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
이자수입			○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와 집행 잔액은 서울과학고등학 교에 반납